

## 「수익증권저축약관」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</b></p> <p>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-----(생략)</p>	<p><b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</b></p> <p>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<b>변경내용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</b>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-----(생략)</p>	
<p><b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</b></p> <p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-----(생략)</p>	<p><b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</b></p> <p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<b>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</b>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<b>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</b>하여야 한다. -----(생략)</p>	